

붙임4

예산편성 기준표

* 행정안전부,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고

비목	기 준	사용한도액		비 고
		기본1시간	초과매시간	
인건비 강사료	특급 강사 (전·현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·차관(급), 대학총장(급) 국회의원, 광역자치단체장 공공기관·공직유관단체의 장 대기업 회장 및 전직 공기업 대표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(도에 사전협의) 	300,000원	200,000원	
	1급 강사 (전·현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의 교수 / 판·검사 /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, 교감 4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변호사, 의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감정평가사 등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	250,000원	120,000원	
	2급 강사 (전·현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및 5급 이하 공무원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, 원어민 어학 강사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체육, 종교인,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전문직 종사자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	150,000원	80,000원	
	3급 강사 (전·현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강사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체육·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외국어·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유사경력으로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자 	100,000원	50,000원	
	보조 강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	70,000원	40,000원	
	다수인 공연 (음악 및 공연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연자 개별별 송금 원칙, 다만 공연 기획사와 계약한 경우 업체에 지급 가능 	- 5인 이하 - 6~10인 - 11인 이상	50만원 70만원 90만원	
	※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※ 여비 지급 불가(단, 증빙자료 제출 시 원거리 교통비(고속·시외버스, 기차 등)은 가능) ※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(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) ※ 코로나19 관련, 방문수업 강사료는 집합교육 기준으로 책정한 강사료 이하로 지급 ※ 지출증빙: 강의확인서, 강사자격 확인자료, 강의자료, 강의사진 등 ※ 단체(참여단체 포함)와 지부·지회의 대표,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 불가 ※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, 공제해 둔 세액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(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) - 건당 12.5만원 이하의금액은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(원천징수 면제)			